

# 상담위원회 규정

제정 2017.10.16

**제1조(목적)** 본 위원회는 대학 및 스쿨 학생 상담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위원회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상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본 위원회는 교학처장, 학생진로상담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스쿨(학과) 학생담당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진로상담센터장이 맡는다.

**제4조(기능)**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·의결한다.

1. 학생상담에 관한 계획 수립
2. 학생상담에 관한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
3. 위기사례 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

**제5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7조(회의소집 및 의결)**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8조(사무)** 본 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학생진로상담센터에서 관리한다.

**제9조(간사)** ① 상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제1항의 간사는 학생진로상담센터 전임상담원으로 임면하며, 상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